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등〉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4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및 현행법상 규정 내용	3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I. 제안경위

1. 제출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4. 6. 20.
3. 회부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법 제9조에 따라 이하 “소장”이라 함)은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히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안 제53조의2제3항 신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3조의2제4항 신설).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u>④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u>⑤ -----안내,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접견 지원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u> <u>-----.</u>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및 현행법상 규정 내용

법무부가 2021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수용자(37,751명, 응답률 73.9%) 중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인 7,848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2,16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 수용자(51,050명)의 미성년 자녀는 약 16,500명 수준으로 추산하였음.¹⁾

[표 2] 수용자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2021년 조사 기준)

(단위 : 명)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인원	42	405	416	448	526	616	641	680	694	720
연령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합계
인원	820	711	758	825	758	742	755	790	82	12,167

* 자료: 법무부

자녀가 있는 수용자(7,848명)를 대상으로 조사시점 기준 자녀의 주 양육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90% 가량은 배우자, 자녀의 조부모 등이 양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위탁시설(186명), 지인(57명) 등이 양육하거나 자녀 혼자 생활(54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용자가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76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1)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2021. 5. 11.

[표 3]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 현황(2021년 조사 기준)

(단위 : 명, 수용자 기준)

양육자	배우자	자녀의 조부모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성년인 수용자의 자녀	위탁시설
인 원	6,416 (81.8%)	719 (9.2%)	161 (2.0%)	95 (1.2%)	186 (2.4%)
양육자	지 인	혼자 생활	모 름	기 타	합 계
인 원	57 (0.7%)	54 (0.6%)	76 (1.0%)	87 (1.1%)	7,848

* 자료: 법무부

한편,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규정 내용을 보면, ①제41조제3항²⁾에서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제53조의²⁴⁾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법무부는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친화형 가족만남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2024. 6, p.168.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는 소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⁵⁾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의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법무부의 2021년 전수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규모가 적지 않고, 이들 중에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의 형 집행기간 중 안전하게 보호·양육받을 필요성이 있고, 수용자가 형 집행 종료 후 사회 복귀시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등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5)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먼저, 소장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안 제53조의2제3항을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와 접견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1조제3항)에 그치고 있지만, ①주로 학령기인 미성년 자녀가 학업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말 접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②자녀가 수용자 부모에 대한 위화감·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대면 및 화상 접견시 일상복 환복을 허용하는 방안 등 장소적인 측면 외에도 원활한 접견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장에게 접견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안 제53조의2제4항은, 개정안을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용자의 가족관계와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역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체계·자구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으로 표현한 부분은 제53조의2의 조문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의 법문상 표현만으로는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

음. 따라서, 제5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지칭하고자 한 취지를 명확히 하여 안 제53조의2제4항 중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